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추천대상 자격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건
- 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 및 회의(안 제5조, 제6조)
  - 이사장추천위원회 존속 기간
  -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 다. 이사장후보의 추천(안 제8조)
  - 이사장후보 추천 대상 자격 및 추천인원
  - 이사장후보의 재추천 사유

## □ 검토의견

### 가. 법령적합성

- 동 제정조례안은 당초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제정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8조에 규정되었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비해 그 기준과 내용이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미비점을 갖고 있던중 지난 3.25 법률 제6665호로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금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7629호로 개정되었으며 금번 경기도에서 동 개정법령을 근거로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이 별도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회부된 안건임.
-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근거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조항에 신설된 ①, ②항을 비롯한 7개 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 있음으로 검토결과 법령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인원)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사의 임·직원(비상업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위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나. 내용타당성

- 내용 타당성면에 있어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안 제3

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추천대상, 구성요건”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회 소집·의결요건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 이사장후보 추천대상 자격과 추천인원, 그리고 재추천 사유 등에 대해 근거법령 내용에 따라 명시되었음.

- 아울러, 각 조항의 내용도 지방공기업법령을 근거로 작성된 경기도의 조례표준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질의중점사항

- 동 조례안 제8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①후보의 모집, 조사등의 업무내용은 어떤 것이며 ②전문기관이라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